

대리 행위의 한계

이 순 관 <보험감독원 조정역>

1. 사고의 개요

1989년 11월 16일 신청인 A와 피신청인 B 사이에 A를 피보험자로 하여

- 보험 목적 : A가 경기도 양평읍 창대리 소재의 공장내에 보관하는 원부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
- 보험금액 : 1억원
- 보험기간 : 89. 11. 16일부터 90. 11. 16일까지 1년간 등을 내용으로하는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그 후 1990년 9월 11일 12시 30분경 A의 대리인 C와 B소속 대리점 대표 D사이에 위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태풍·홍수 및 범람 등 풍수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B가 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풍수재위험담보특약을 추가하고 보험금액도 1억5천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17시 30분경 풍수재위험담보특약 추가 및 보험금액의 증액에 따른 추가보험료가 납부되었는데, 1990년 9월 10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1990년 9월 11일 24:00경 A경영의 위 공장이 70~160cm 깊이로 침수되어 위 공장내에 보관중이던 보험목적물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서로의 이견

신청인 A는 보험목적물이 침수

되기 이전에 보험(풍수재위험담보특약)에 가입 하였으므로 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침수된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신청인 B는 A의 대리인 C와 대리점대표 D사이에 수정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1990년 9월 11일 12:30분경에는 이미 보험목적물을 보관중이던 공장이 침수되기 시작한 이후로써 보험목적물이 침수 되었거나 침수될 것이 명백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동 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심의

동 사안은 보험분쟁조정신청이 있었으나, 동 신청 후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동 소송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키로 한 것으로서,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 7. 7선고, 86다카 1004판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소의 D와 C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1990년 9월 11일 12:30경에는 이미 A경영의 공장 일부가 침수되기 시작한 이후이고 계속되는 집중 호우로 인하여 공장의 침수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침수되었거나 침수될 것이 명백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확정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소의 D는 B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A로 하여금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할 것이고, A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의 C로서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정과 내용,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등에 비추어 소의 D의 위와 같은 배임적인 의도를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B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적법한 대리행위로서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91. 5. 31판결, 90가합68760)”

4. 맺는 글

본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건 수정 보험계약 체결 전일인 1991년 9월 10일은 이미 A의 공장이

위치한 경기도 양평군 일원에 집중호우가 내림으로써 양평군청은 1990년 9월 10일 13:00경 및 같은날 15:00경에 각각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를 발령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위 공장이 위치한 창대리 일대 거의 전지역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7:00경부터 24:00경 사이에는 양평군내 일부국도 및 지방도, 교량 등이 유실되거나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집중호우는 다음날에도 계속되어 1990년 9월 11일 08:00경에는 창대리의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침수되지 않았던 위 공장에도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주방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여 약 10cm 깊이로 침수되고, 같은 날 09:00경에는 위 공장의 동쪽에 위치한 개울둑이 무너짐으로써 개울너머 평야지대 전지역이 약 1m 이상의 깊이로 침수되었으며, 같은 날 본건 보험계약체결 당시인 12:00경에는 주방이 약 25cm 깊이로 침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보험목적물이 침수되었거나 침수될 것이 명백하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정상적인 보험자라면 이와 같은 물건을 인수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함에도 보험자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지 않게 보험자를 위하여 보조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보험대리점이 위와 같은 보험물건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잘 알면서도 보험계약 체결권한이 있다하여 본건과 같이 체결해서는 안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본건 계약체결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의 공장 전무로 있는 C가 1990년 9월 11일 아침일찍 사무실로 출근하다 인근 영등포 로터리가 침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공장에 전화를 걸어 주방이 약 10cm 깊이로 침수되고 인근평야지대가 완전침수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집중호우가 계속되자, 같은 날 12:30경 평소 친분이 있고, 보험자 B를 대리하여 89년 10월 16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바 있던 대리점 대표 D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풍수재위험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다음 위 D에게 공장이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위 화재보험계약에 풍수재위험담보특약을 추가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청약하였으나, 이에 D는 처음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여 청약을 받아 들일수 없다고 하자, A의 대리인 C가 계속 청약을 받아줄 것을 간청 내지는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풍수재위험담보특약을 추가하기로 함과 동시에 보험금액도 5천만원이나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5조(보험사고의 주관적 확정 효과)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만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보험금액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6조(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에서는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계약체결당시 보험사고가 확정되었거나 확정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상법 법리의 해석 적용과도 뚜렷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 상법 법리의 해석 적용 이전에 위에서 인정된 계약체결경위와 같이 보험대리점대표 D의 배임적 행위등의 사유만으로도 동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보험자를 위한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 B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본건을 기각관결 한 것으로 사료된다. ●